

##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

제정 1999년 5월 4일 규칙 제395호  
개정 2001년 11월 21일 규칙 제484호  
일부개정 2020년 11월 6일 규칙 제889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(이하 “협의회 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)** 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(이하 “설립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 
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3조(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)**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(이하 “설립사실통보서”라 한다)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.  
<개정 2001. 11. 21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법률,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(이하 “설립증”이라 한다)을 교부하거나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11. 21>

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를 협의

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11. 21>

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1. 6>

**제4조(협의회 가입·탈퇴원서)** 협의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
[본조신설 2001. 11. 21]

**제5조(협회의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)**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,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. <개정 2001. 11. 21>

**제6조(협의회 설립사실 보고)**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·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11. 21>

### **부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1. 11. 21 규칙 제48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0. 11. 6 규칙 제88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신설 2001. 11. 21>

###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

명	칭	
대 표 자	근무부서	
	직 급	
	성 명	
회	원	의 명
설립총회 개최현황	일 시	
	장 소	
	참석회원수	의 명
	결의사항	
<p>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○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사실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○ ○ ○ ○ 귀하</p>		
<p>&lt;첨부서류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</li> <li>협의위원명부·회원명부(소속기관 및 근무부서, 직급, 성별, 성명, 전화번호 기재) 각1부</li> <li>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</li> </ol>		

[별지 제2호서식] <신설 2001. 11. 21>

##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

명 칭		
대 표 자	근무부서	
	직 급	
	성 명	

오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○  
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( 기관 명 )

인

[별지 제3호서식] <신설 2001. 11. 21>

##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

명	칭	
대 표 자	근무부서	
	직 급	
	성 명	
보완을 요하는 사항		
보 완 이 유		
보 완 기 한		

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○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( 기 관 명 )

인

[별지 제4호서식] <신설 2001. 11. 21>

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(탈퇴)원서

소 속			
직 급			
성 명		성 별	
<p>위 본인의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에(서)가입(탈퇴)하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</p>			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01. 11. 21>

## 제○회 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기록

---

1. 일 시 :

2. 장 소 :

3. 참 석 :           명(협의회    명, 설립기관의 장 등   명)

○ 대표자 및 협의위원

○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

4. 협의내용

5. 합의사항

“별지참조”

6. 기타 토의사항

\*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“대표자” 및 “협의위원”의 성명을, 기관장(대리시수임자) 및 관련공무원은 직·성명을 기재

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01. 11. 21>

## 제○회 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

---

제 ○ 회 ○ ○ ○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
- 
- 

년 월 일

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설립기관의 장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

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01. 11. 21>

##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

( 설립기관명 )

연번	설 립									미설립					
	직장 협의회 명칭 (소속 기관)	대표자			협의 위원수	설 립 일	회원				사유	회원			
		근무 부서	직급	성명			계 (A)	가입 금지 (B)	가입대상(C)			계 (A)	가입 금지 (B)	가입 대상 (C)	
									가입	미가입					

※ 공무원수 A=B+C